



**장외파생상품 설명서**  
**평균통화선도(Average Rate FX Forward)**

**상품분류**

**장외파생상품은 초고위험 상품이며, 이 상품은 장외파생상품 위험등급(Ⅰ~Ⅲ)중 중간 단계인 Ⅱ 단계 상품에 해당됩니다.**

**장외파생상품의 등급별 설명**

<b>Level I (주의)</b>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이자율 스왑, 옵션매수 등
<b>Level II (경고)</b>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FX스왑 등
<b>Level III (위험)</b>	손실범위가 무제한적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I, II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장외 파생상품

본 설명서는 평균통화선도계약에 대한 기본설명서로서, ISDA Master Agreement 등에 기반하여 거래되는 동종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즉, 동종 금융상품 거래시 매번 본 설명서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본 설명서에서 설명된 종류의 금융상품 거래시 본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등**

• **장외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3 에 의한 파생상품(\*) 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파생상품 계약조건이 정형화, 표준화되어 한국거래소 등이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와 달리, **비정형화, 비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으로서 **거래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체결**됩니다

(\*) 파생상품: 주식 채권 통화 등의 기초자산의 가치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계약상의 권리

• **상품의 특징**

평균통화선도계약은 [수출입] 거래와 관련한 외환현금흐름을 완전 헤지(hedge)할 수 있는 상품이고, 외화 현금흐름을 헤지(hedge)하면서 장래의 환율을 평균환율로 고정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주요내용: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계속

### ▣ 민원·분쟁 상담 요청이 빈번한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

Q1 :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적합성 여부는 금융소비자의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요구하는 금융상품별 정보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를 받을 때에는 궁금한 사항을 끝까지 확인하고, 금융상품 설명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투자에 따른 위험: 본 상품으로 헤지할 경우 평균 확정환율이 약정환율보다 하락할 경우 본 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환율 하락에 따른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지만, **평균 확정환율이 약정환율보다 상승할 경우 본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예정하신 바와 같이 계약금액 이상의 미화 수출대금이 유입될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대금의 환차익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으나, **만일 계약금액 이상의 수출대금이 유입되지 않거나 달리 외화자산이 없는 경우 본 상품으로 인한 환차손을 입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민원·상담 분쟁조정 연락처

상품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기업외환영업부 (02-724-4583, 4472)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귀사에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요설명(핵심설명서)부분은 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아래 설명서 본문 참조)

### 유의사항

- 수수료: 업무원가 등을 고려한 은행의 손익은 가격(대고객환율)에 포함되어 있으며, 약정한 가격 이외에 고객이 추가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동 거래 계약의 중도해지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동의를 얻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제시하는 정산금액을 고객이 받아들이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정산금액은 해지 시점의 시장가격(환율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산하며 계산 주체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담당합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판매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등 관련 사항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 3항,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가)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위반 사실을 기재한 해지요구서와 (나) 법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일반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을 오로지 위험회피(해지) 목적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본 상품에 상응하는 위험회피대상 부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명 - 평균통화선도**

■ **상세 내용**

- 본 설명서는 평균통화선도계약에 대한 기본설명서로서, ISDA Master Agreement 등에 기반하여 거래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 평균통화선도계약은 [수출입] 거래와 관련한 외환현금흐름을 완전 헤지(hedge)할 수 있는 상품이고, 외환현금흐름을 헤지(hedge)하면서 장래의 환율을 고정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아래의 각 항목은 평균통화선도계약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이며, 각 수치는 예시로서 제시된 것입니다.

\*아래 분석은 예시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실제 거래는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건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귀하가 본건 거래와 그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건 거래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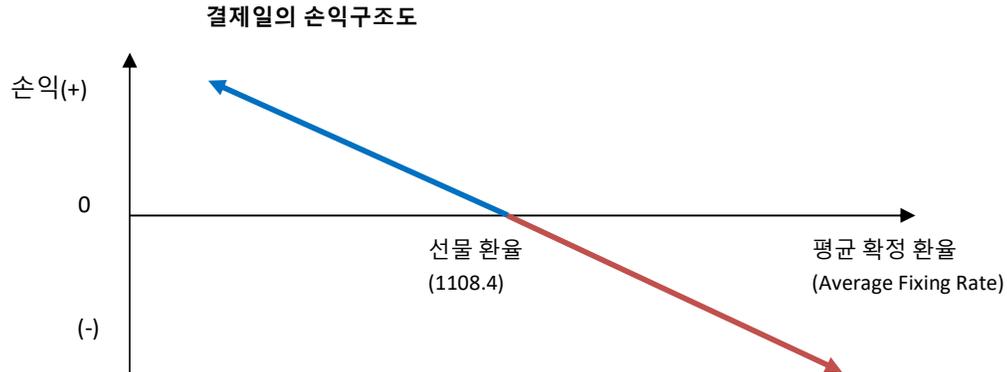
■ **상품의 예시 :** 다음의 거래조건은 USD/KRW 평균통화선도의 단순 예시로서 각 조건은 거래 시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명목금액 :** USD 1,000,000.00
- **거래일 :** 25-Feb-2021
- **만기일(결제일) :** 05-Apr-2021
- **환율계산기간 :** 02-Mar-2021 ~ 31-Mar-2021
- **평균 확정환율 (Average Fixing Rate)** 환율계산기간 동안의 일일 확정환율의 산술 평균
- **확정환율** 1USD 당 원화 가치로 서울 시간 매 영업일 오후 3 시 30 분 로이터 화면 'KFTC18'을 근거로 함.
- **선물환율\* :** 1,108.4000
- **결제방식 :** 원화 차액 결제(결제일에 고객이 평균 확정환율과 약정환율간의 차이에 따라 은행에게 원화를 지급하거나 수취받으면서 결제가 이루어짐.)

- \* 선물환 약정환율 = 거래 시점의 현물환율 +/- 스왑포인트
- \* 스왑 포인트 = 양국간의 금리차이 및 시장 수급을 반영하여 외환시장에서 결정됨.

■ **손익 구조(아래의 수치 및 구조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1) 만기일: 만기일에 (평균 확정환율 - 선물 환율) \*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 혹은 지급하는데, 위 계산이 양수일 때 고객은 원화를 수취하며 음수일 때는 원화를 지급함.
- 2) 만기일에 최종 계산된 평균 확정환율이 사전 약정된 선물환율보다 낮을 경우 거래이익이 발생합니다. 거래이익의 크기는 평균 확정환율의 하락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하락이 클수록 거래이익도 커집니다.



■ **투자에 따르는 위험**

- 만기일의 평균 확정환율이 사전 약정된 선물환율(1108.4)보다 높은 경우, 고객은 (평균 확정환율 - 선물 환율) \*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지급함으로써 손실을 봄. **(이론적으로 고객의 최대손실은 무한대임)**
- 환차손은 달러/원 평균 확정환율의 상승 정도와 비례합니다.
- 위 **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명목금액 이상의 미화(USD) 수출대금이 유입된다면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대금의 환차익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으나, **만일 명목금액 이상의 수출대금이 유입되지 않거나 달러 외화자산이 없는 경우 본 상품으로 인한 환차손을 입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시**

평균 확정 환율 A	사전합의 선물이율 B	명목상 C	FX P&L (KRW) D = (B-A)*C
1,128.4000	1,108.4000	1,000,000.00	-20,000,000
1,118.4000	1,108.4000	1,000,000.00	-10,000,000
1,108.4000	1,108.4000	1,000,000.00	0
1,098.4000	1,108.4000	1,000,000.00	10,000,000
1,088.4000	1,108.4000	1,000,000.00	20,000,000

■ **수수료**

- 업무원가 등을 고려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손익은 가격(대고객 환율)에 포함되어 있으며 약정한 가격 외에는 추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조기 해지**

- 고객은 본건 거래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경우,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지정 계산대리인으로서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금액을 해지 시점의 시장가격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계산합니다.
- **본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최종 청산잔액은 시장상황에 따라 고객에게 이익 또는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은 중도해지로 인한 청산결과에 따라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평가손익에 관한 사항

- 거래에 내재된 특정 재무변수와 관련하여 단순 현금흐름 변동 및/또는 평가 손익(MTM 손익)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내부 회계처리에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시절차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본건 거래의 평가손익은 양국의 시장 변동성 및 금리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건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관련 회사 규정, 법률, 조세 및 회계원칙 등 모든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판매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등 관련 사항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 제 3 항, 제 18 조 제 2 항, 제 19 조 제 1, 3 항, 제 20 조 제 1 항, 제 21 조의 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 (가) 금융상품의 명칭과 범위반 사실을 기재한 해지요구서와 (나) 범위반사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 상품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기업외환영업부 (02-724-4583, 724-4472)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경과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부터 8 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은행은 법령, 제 3 자의 이익의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른 보호 여부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등 법률의 보호를 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자료에 언급된 금리 등은 예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실제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금리 및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은 고객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 손익구조도 및 예시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자료로서 본건 거래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 요소를 제시하지 않습니

다.

-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출처에서 얻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지만, 고객께서 개별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여러 계약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별 거래 체결 여부에 대하여는 귀하가 독립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본 자료는 본건 거래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아니며, 핵심사항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 고객에게 본 금융상품을 설명한 아래 직원은,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이 위 설명서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 [ (서명)  
(☎ Email )

**[고객 확인]**

-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로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본 설명서를 [ 수령 ]하고, 이를 토대로 본 상품에 대한 [ 설명 ]을 받고 본건 거래에 따른 [ 위험 ]을 포함하여 설명 내용을 충분히 [ 이해 ] 하였습니다.

20 . . . . \_\_\_\_\_회사 (서명)